대한심부전학회 심부전 인증의 제도 규정

대한심부전학회 심부전 인증의 제도 규정

제 1 장 목적

제 1 조 (목적)

심부전 인증의 제도의 목적은 대한민국에서 시행되는 전반적인 심부전 진료의 질을 향상시켜 국민 건강 및 의료 효율성을 증진시키는데 있다.

제 2 조 (제도의 목적)

심부전 인증의 제도는 단일 인증 체계로 운영하며, 아래의 목적을 가진다.

1) 심부전의 진단, 분류, 약물 치료 및 비약물 치료 전반에 걸친 임상 역량을 평가하고, 가이드라인 기반 표준 진료를 확산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2) 중증 심부전, 심장이식 및 기계적 순환보조를 포함한 심부전 전 범위에 대한 이해도를 평가하며, 심부전 전문 진료 역량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제 2 장 정의

제 3 조 (인증의 정의)

심부전 인증의는 다음과 같은 능력 및 자격을 지닌 의사로 정의한다.

1) 심부전의 진단 기준, 분류 및 주요 바이오마커를 이해하고 심초음파 등 비침습적 영상 소견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
2) 4대 핵심 약제(ARNI/ACEi/ARB, 베타차단제, MRA, SGLT2i)를 포함한 가이드라인 기반 약물 치료(GDMT)를 시작하고 적정화할 수 있는 능력
3) 급성 심부전의 초기 대응, 이뇨제 전략 및 퇴원 전환기 케어 능력
4) 기기 치료 (ICD, CRT)의 적응증을 이해하고, 중증 심부전, 심장이식 및 기계적 순환보조 (LVAD, ECMO 등)에 대한 기본 임상 지식을 갖춘 능력
5) 동반 질환(신장 질환, 당뇨, 빈혈, 아밀로이드증 등)을 포함한 심부전 환자의 포괄적 관리 및 적절한 전원 판단 능력

제 3 장 자격 요건 및 취득 절차

제 4 조 (자격 요건)

심부전 인증의는 대한심부전학회 (이하 '학회') 정회원이어야 하며,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심부전을 진료하는 의사로서 학회가 지정하는 심부전 관련 연수평점을 20점 이상 수료한 자(유럽/미국/일본 심부전학회 증빙 시 연수평점 각 5점 인정). 단, 신청 시점에 평점이 부족한 경우 당해 연도 심부전 인증의 연수교육 평점을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으며, 해당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적격 승인할 수 있다.
2) 최근 5년 이내 학회가 주최하는 Heart Failure Seoul을 2회 이상 참석한자
3) 최근 2년 간 50명 이상의 심부전 환자 치료 목록을 제출한 자
4) 심장 관련 학술대회에서 초록 발표를 하거나 학회지에 주저자(1저자/교신저자)로 논문을 발표한 자

제 5 조 (특별심사)

1) 제4조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중 만 50세 이상인 자는 특별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연령 산정 기준일은 매년 시행 공고를 통해 정한다.
2) 특별심사 신청자는 다음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한심부전학회 임원 활동 경력: 이사장, 회장, 전 회장, 전 의장, 이사, 위원장까지 인정
   (2) 심부전 분야 관련 논문 목록: 주저자 또는 공저자로 참여한 논문 최소 2편, 최대 10편
3) 특별심사 신청자의 자격시험 면제 및 교육 대체 여부는 심부전 인증의 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4) 특별심사에서 승인된 자는 자격시험을 면제받으며, 오프라인 연수교육은 온라인(VOD) 교육 이수로 대체한다.

제 6 조 (자격 취득 절차)

1) 일반 신청자의 자격 취득은 서류심사(제4조 요건 확인), 오프라인 연수교육 이수, 자격시험 합격의 순서로 진행한다.
2) 신청자는 제4조의 요건을 증빙하는 서류를 학회에 제출하며, 인증의 관리위원회는 서류를 심사하여 적격 여부를 확인한다.

3) 서류심사에서 적격자로 인정된 일반 신청자에 한하여 오프라인 연수교육을 수강할 수 있으며, 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4) 제4조 제1호에 따라 조건부로 적격 승인된 자가 해당 연도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그 승인은 취소된다.

5) 제5조에 따른 특별심사 신청자는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자격시험을 면제받고 온라인(VOD) 교육 이수로 오프라인 연수교육을 대체할 수 있다.

6) 자격시험 합격자 및 특별심사 승인자로서 해당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학회는 인증의 자격증을 교부한다.

제 4 장 교육

제 7 조 (교육 운영)

심부전 인증의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심부전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 프로그램의 기획 및 강사 초청은 학회 교육위원회에서 담당한다.

제 8 조 (교육 방법)

교육은 오프라인 연수교육 및 온라인(VOD) 교육으로 운영한다. 신청자의 사전 연수교육 이수는 필수이며, 제5조의 특별심사 승인자는 온라인(VOD) 교육 이수로 대체할 수 있다. 교육 운영 방식은 인증의 관리위원회 결정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

제 9 조 (교육 시행)

오프라인 연수교육은 연 1회 실시한다. 학회 교육위원회가 연자를 선임하고 프로그램 등 구체적 일정을 결정한다.

제 10 조 (교육 내용)

연수교육은 심부전 인증의 커리큘럼에 따라 아래 교육 영역을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국내심부전진료지침 및 미국, 유럽가이드라인에 기반한다.

1) 심부전 병태생리, 분류 및 진단

2) 가이드라인 기반 약물 치료 최적화

3) 급성 심부전 입원 관리, 이뇨제 전략 및 퇴원 전환기 케어

4) 기기 치료 (ICD/CRT) 및 부정맥 관리

5) 중증 심부전, 심장이식, 기계적 순환보조(LVAD, ECMO) 및 완화의료

6) 동반 질환 관리 (신장 질환, 당뇨, 빈혈, 아밀로이드증, 유전성 심근병증 등)

제 11 조 (교육 자료)

연수교육 강의 슬라이드, 핵심 문제 및 각종 증례를 학회 온라인 플랫폼에 등록하여 오프라인 연수교육 신청자가 자율적으로 재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제 5 장 자격시험

제 12 조 (시험 시행)

심부전 인증의 자격 시험은 매 1년마다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인증의 관리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추가 시행할 수 있다.

제 13 조 (시험 구성)

심부전 인증의 자격 시험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시험 형식: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객관식 필기시험 (임상 시나리오 기반 5지 선다형 MCQ)
2) 시험은 일반 심부전(진단, GDMT, 급성 심부전 관리 등)과 중증 심부전, 심장이식 및 기계적 순환보조(MCS) 내용을 모두 포함한다.
3) 문항은 ESC 심부전 가이드라인, ACC/AHA 가이드라인 및 대한심부전학회 지침을 기반으로 출제하며, 주요 임상시험 근거(RCT)를 포함한다.
4) 합격 기준은 시험의 난이도와 응시자들의 전반적인 성취도를 고려하여 인증의 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14 조 (응시 및 인증)

1) 자격시험의 응시 절차, 응시료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고지한다.
2) 자격시험은 제6조에 따라 적격자로 인정된 일반 신청자 중 오프라인 연수교육을 이수한 자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3) 인증의로 인정된 자에게 학회는 자격증을 교부한다.

제 15 조 (재응시)

자격시험에 불합격한 경우 다음 회차 이후 재응시가 가능하며 응시 횟수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단, 재응시 시 소정의 응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재응시 시 기존 교육 이수 인정 범위 등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공고한다.

제 6 장 자격 갱신

제 16 조 (유효기간)

1) 자격증의 유효기간은 인정 연도로부터 5년으로 한다.

2) 심부전 인증의는 5년마다 자격을 갱신하여야 한다.

제 17 조 (갱신 연기)

1년 이상 장기 해외 체류한 경우나 부득이한 신변의 문제가 있는 경우 갱신 기간을 연기할 수 있으며, 해당자는 증빙 서류를 인증의 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유효기간 및 유예기간 내에 갱신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자격은 상실되며 제3장의 자격 취득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제 18 조 (갱신 요건)

심부전 인증의 갱신 자격은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5년간 학회에서 인정하는 심부전 관련 연수강좌(필수과정 포함) 30평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2) 해당 5년 이내 학회가 주최하는 Heart Failure Seoul에 최소 2회 이상 참석하여야 한다.

3) 5년 이내 인증의를 위한 연수교육을 최소 1회 이상 수료하여야 한다.

제 19 조 (갱신 안내)

인증의 관리위원회는 자격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 인증의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인증의는 유효기간 전에 갱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20 조 (유예기간)

유효기간 전에 자격을 갱신하지 못한 인증의의 자격은 상실되나, 1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갱신 서류를 제출한 경우 다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제 21 조 (자격 재취득)

유예기간 동안에도 자격을 갱신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3장의 자격 취득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제 22 조 (심사료)

자격 갱신을 위하여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7 장 관리위원회

제 23 조 (구성 및 역할)

학회 내에 대한심부전 인증의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를 두며, 교육위원회와 수련위원회가 각각 다음 역할을 담당한다.

1) 관리위원회는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총무이사, 기획이사, 교육이사, 수련이사, 진료지침이사, 윤리이사로 구성한다.
2) 교육위원회: 연수교육 프로그램 기획, 커리큘럼 개발, 강사 선임 및 VOD 등 온라인 교육 운영
3) 수련위원회: 인증의 자격시험 출제 및 시행, 합격자 인증, 자격 갱신 관리

제 24 조 (목적)

관리위원회의 목적은 대한심부전 인증의의 평가, 인증, 교육 및 자격 갱신을 위한 제도 및 시행을 관리하는 데 있다.

제 25 조 (사업)

1) 심부전 연수교육 및 온라인(VOD) 교육 운영
2) 심부전 인증의 자격시험 출제 및 시행, 문제은행 관리
3) 심부전 인증의 자격 평가 및 인증
4) 심부전 인증의 자격 갱신 관리
5) 심부전 교육 병원 선정 및 교육생 소개
6) 국제 학술단체(HFA/ESC, HFSA 등)와의 교육 협력 및 자격 상호인정 논의

제 26 조 (임기)

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장의 임기에 따르며 연임할 수 있다.

제 27 조 (위원장)

관리위원회의 총괄 위원장은 학회 이사장이 겸임하며, 교육위원회 위원장 권한은 학회 교육이사에게, 수련위원회 위원장 권한은 학회 수련이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제 28 조 (위원 임명)

관리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

본 규정은 이사회 의결일로부터 시행하며, 개정된 규정은 해당 이사회 의결일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인정 연수강좌)

자격 취득 및 갱신에 인정되는 심부전 관련 연수강좌는 다음을 포함한다.

1) Heart Failure Seoul

2) 심부전 인증의 연수교육

3) 대한심부전학회 동계 심포지엄

4) 대한심부전학회 하계 심포지엄

5) 대한심부전학회 개원의 및 전공의 연수강좌

6) 산하 연구회 심포지엄

대한심부전학회

Korean Society of Heart Failure (KSHF)